

「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」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

- ▶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이용 수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.
 - * (5~6개 금융회사 다중채무자) 총당금 요적립률의 130% 적립
 - (7개 이상 금융회사 다중채무자) 총당금 요적립률의 150% 적립
- ▶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 적용시, SPC등 명목상 차주가 아닌 실질 차주를 기준으로 하여,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의 우회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.
- ▶ 지역 내 관계형금융 활성화 및 지역경제 지원이라는 영업구역 내 의무 여신 비율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, 영업구역 내 실질적 영업활동이 없는 SPC지점에 대한 신용공여는 해당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합니다.

'23.9.13.(수) 개최된 제16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「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」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되었다. 금번 규정 개정의 목적은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제고하는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.

①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이 의무화된다.

현재 저축은행은 총당금 적립시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감독규정 상 최저적립 수준* 이상을 적립중이나, 차주가 다중채무자인지 여부는 총당금 적립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다. 반면 상호금융·카드 업권**은 다중채무자 총당금 추가 적립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총당금을 더 많이 적립하고 있다.

* 가계대출 : (정상)1% (요주의)10% (고정)20% (회수의문)55% (추정손실)100%

** (상호금융) 5개 이상 금융회사 다중채무자 : 총당금 요적립률의 130%
(카드) 2개 이상 신용카드업자 다중채무자(카드론) : 총당금 요적립률의 130%

이번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은 가계대출 차주의 금융회사* 이용수에 따라 총당금을 추가 적립하여야 한다. 5~6개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총당금 요적립률의 130%를 적립하고, 7개 이상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총당금 요적립률의 150%를 적립하여야 한다. 이를 통해 취약차주인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. 동 제도는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등을 감안하여 '24.7월부터 시행된다.

* 대부업법상 여신금융기관 및 금융위 등록 대부업

② 실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적용된다.

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*를 준수해야 한다. 하지만 명목상 차주가 SPC인 경우, SPC 기준으로 차주 업종(예: 금융업)을 구분을 구분하여,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규제를 우회할 소지가 있었다.

* 건설업(A) 30%, 부동산업(B) 30%, PF(C) 20% 이내, A+B+C 50% 이내

금번 규정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은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. 동 제도는 규정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, 기존 대출을 실차주 기준으로 재분류 하면서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, 상환 만기 등을 감안하여 규정 시행 후 2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다.

③ 실질적 영업활동이 없는 SPC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된다.

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*을 준수하여야 한다. 그러나 SPC 대출의 경우 SPC지점이 실제없이, 등기만 영업구역 내에 있음을 근거로 영업구역 내 여신으로 분류하는 사례가 있었다.

* 서울·인천·경기 50%, 그 외 지역 40% 등

지역 내 관계형금융 활성화 및 지역경제 지원이라는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 규제 취지를 감안하여 영업구역 내에서 실질적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SPC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. 동 제도는 신규대출 취급분부터 개정안 공포후 즉시 시행된다.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	책임자	과 장	신장수 (02-2100-2990)
		담당자	사무관	서승리 (02-2100-2993)
	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	책임자	국 장	이길성 (02-3145-6770)
		담당자	팀 장	이희성 (02-3145-6773)